제29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(2021. 7. 22.)에서 의결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7월 23일

고흥군의회의장 송 영 현

규칙 제2021-33호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3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고흥군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.

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3조의3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한 회의에 한정한다)를 그 대상으로 한다. ② 중계방송은 생방송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3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고흥군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.
<신 설>	제93조의3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한 회의에 한정한다)를 그 대상으로 한다. ② 중계방송은 생방송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